

공 고

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9 - 103호

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(서면에 의한 납입의 고지)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10월 17일

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

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

『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, 『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』, 『방송법』 및 『전기통신사업법』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체납자에게 독촉고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**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**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**계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『질서위반행위 규제법』 제24조에 의거 「국세징수법」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채재산권 등 **귀하(사)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**함과 『질서위반행위 규제법』 제53조에 의거 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1. 관련법령

- 행정절차법 제14조, 제15조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76조 등
-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
-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등
- 방통법 제76조 등

2. 계시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3. 관련사항 문의 : 방송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재정팀

(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2동 (중앙동) ☎ 02-2110-1371)

붙임 : 대상자 명단 1부.

대상자 명단

※ 체납 시 과태료에 3% 가산금과, 매월1.2% 증가산금을 60개월 동안 가산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**강제 징수(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)**합니다.

(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증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.)

(단위:원)

No.	과태료 고지번호	체납자	체납자 실명번호	최초 부과 과태료 금액	체납자 주소
1	0178190004530001026	주식회사 폰템	119-86-699** 110111-51021**	1,500,000	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48
2	0178190004530001036	주식회사 비엘시스템	107-88-259** 110111-54840*	1,500,000	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41
3	0178190004530001053	주식회사 아이지피네트웍스	847-81-009** 110111-66518**	1,200,000	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5
4	0178180004530012065	(주)두드림코퍼레이션	113-86-881** 110111-54704**	15,000,000	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85길 14
5	0178180004530012093	엔젤모바일	390-24-004**	1,200,000	경상남도 창원군 남지읍 남지중앙로 112
6	0178180004530012073	유비코퍼레이션	122-31-652**	1,500,000	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56
7	0178180004530012104	정텔레콤 (휴대폰마트 조치원점)	396-14-005**	2,500,000	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조치원5길 3
8	0178180004530012066	착한남자 모바일	874-19-000**	700,000	서울 동작구 등용로 95-1
9	0178180004530012087	피터드러커매니지먼트 (엠알통신)	567-81-007**	1,500,000	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성로 137
10	0178180004530012146	T&C 양산점	873-06-003**	1,200,000	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장로 85
11	0178190004530002230	류호신(주) (구, (주)베이앤컴퍼니, (주)바탕스네트워크)	110-81-793** 110111-37052**	15,000,000	서울 중구 을지로3길 34